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교 통 안 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노형욱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된 집행적 성격의 교통안전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교통안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(제48조 신설)
-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
 -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
 - 법 제50조에 따른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
 - 법 제55조의3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
 -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(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를 제48조의2로 하고,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(업무의 위임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
2.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
3. 법 제50조에 따른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
4. 법 제55조의3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
5.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(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)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8조(업무의 위임)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.</u> 1.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2.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 안전점검 3. 법 제50조에 따른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 사고원인조사 4. 제55조의3에 따른 운행기록 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5.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(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)
<u>제48조 (생 략)</u>	<u>제48조의2 (현행 제48조와 같음)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통안전정책과	
연 락 처	044-201-3868